

고성군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49호)

심사보고서

1997. 11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1. 22
나. 회부일자 : 1997. 11. 24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7. 11. 26

고성군수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광역상수도의 원 수요금이 97년 2차례에 걸쳐 인상되었으며 현 상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노후관 개량 등 시설투자 예산이 부족하여, 요금의 인상으로 수도물 소비의 최소화를 유도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가뭄시 식수난을 극복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공사 또는 다른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비용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비용부담 징수 (안 제16조의 1 신설)
- 나.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자에 대하여 비용부담 징수
(안 제16조의 2 신설)
- 다. 제16조의 1, 제16조의 2에 의한 부담금 산출기준을 사안에 따라 명시
(안 제16조의 3 신설)
- 라. 수도시설이 원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군수가 긴급 복구하여야 함.(안 제16조의 4 신설)
- 마. 다가구주택(아파트, 원룸주택 등)은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준공승인서를 증거로 가구분할 납부를 적용하도록 함.(안 제18조제1항7호에 단서조항 신설)
- 바.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, 권리권의 승계시에 체납 수도요금은 승계되지 아니함.
(안 제22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)

- 사. 제12조의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은 현장을 중심으로 기준 수용가의 분포밀도, 용량, 신규 수용으로 인한 시설보강 등에 의하여 산출된 근거에 기준하였음.
- 아. 업종별 요율의 기준적용은 가정용은 평당 214.1원에서 334.3원으로 56.1% 상향하고 영업1종과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통합하여 평당 487.2원으로 46.9% 상향조정하고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하여 평당 515.9원에서 620.2원으로 20.2% 상향하고 육탕 1종은 평당 537.1원에서 630.8원으로 17.5% 상향하고 육탕 2종은 현행으로 유지하였음.
- 자. 제16조의 3에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부담금 산출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 5의 수압별 누수량 조건표와 별표 6의 관내 수량계산표를 적용하도록 하였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광역상수도의 원수요금이 97년중 2차례에 걸쳐 인상되었으며 현 상수도요금이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, 노후관 개량 등 시설투자 예산이 부족하여 요금의 인상으로 수도물 소비의 최소화를 유도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가용시 식수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은 64.2%이지만 가정생활 및 물가영향을 고려하여 34.6%만 적용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금후 체납 수도요금 대책은
- 답 : 체납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징수 독려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수도요금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며, 시일이 도래되면 결손처분 대상이됨.
- 문 : 고성읍의 상수도 일반가정의 월평균 상수도사용료 및 여타 지역의 간이상수도 평균 사용료는
- 답 : 고성읍의 상수도사용료는 월평균 4,000~5,000원정도이며, 면의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이 5,400원정도임.
- 문 : 상수도요금을 너무 많이 인상하지 않느냐
- 답 :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약 750 원정도 되어야 한다.
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여 334.3원으로 조정하였음.

6. 토론

- 이상근의원 : 현실적으로 공강한다.

상수도의 누수현상을 잡아 사용자에게 부담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망하며 동의합니다.

- 안수일의원 : 군민가계에 부담을 많이 주므로 반대합니다.

7. 심사결과

- 1997. 11. 26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중 찬성 5명,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음.